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7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4.

발 의 자 : 김용태 · 서천호 · 박준태
이종배 · 조지연 · 박충권
김성원 · 주호영 · 우재준
정성국 · 조은희 · 김예지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,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
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.

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0조).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0조(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30조(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)</u> <u>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</u> <u>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</u> <u>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</u> <u>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</u> <u>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</u> <u>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	<u>제30조(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)</u> <u>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</u> <u>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</u> <u>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바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</u> <u>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</u> <u>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</u> <u>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</u> <u>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</u> <u>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